

2022년 도 문화재 수리기술위원회

제3차 복원정비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2. 4. 26.(화), 14:00 ~ 17:2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회의실(1층)
- ▣ 출석위원 : 장석하(위원장), 남효대, 이상석, 양은경, 조인숙, 최종덕
(이상 6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수 리 기 술 위 원 회

■ 고지사항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회의, 의결방식 및 회의록 공개

1. 법 제3조의6(위원회의 회의)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마다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2.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제7조(의결방식)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회의내용은 기록·녹취가 되며,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5일 이내에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행령 제3조의4(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회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회 위원이나 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목 차

【심의사항】

1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사적)」 고분 정비	
2	「강진 전라병영성(사적)」 복원정비공사	

【보고사항】

3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개정	
---	---------------	--

【심 의 사 항】

안건번호 (복원 2022-3차-001)

1.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고분 정비

가. 제안사항

- 전라북도 남원시 소재 사적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고분 정비 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21년 발굴조사 완료 후 정비되지 않은 30호분을 정비하고자 마련한 설계(안)에 대하여 수리기술위원회의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남원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사적)
 - 소 재 지 :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성내길 35-4외
 - 지정면적 : 98,225m²(40필지)
 - 지 정 일 : 2018. 3. 28.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고분 정비
 - 사업지침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발굴이 완료된 고분군의 정비를 시행한다.
 - 사업내용(30호분 정비)
 - 터파기(문화재구역내) : 374.54m³, 점토관축다짐 : 976.98m³
 - 주석곽정비(석곽 : 6.42m × 0.75m × 1.76m, 개석 : 2.0m × 0.75m × 0.4m/ 14매) : 1개소
 - 부장곽정비(석곽 : 3.1m × 0.4m × 0.8m, 개석 : 1.0m × 0.5m × 0.2m/ 12매) : 1개소
 - 잔디식재(평떼) : 1,522.5m²

○ 조사이력

연번	조사유형	조사년도	조사내용	비고
1	지표조사	1963	고분 20여기 확인(분포조사)	전영래
2	발굴조사	1989	수혈식석곽묘 4기(15·16·19호분) : 유개장경호, 기대 등 횡혈식석실분 1기(36호분) : 철도자, 꾸미개 등	전북대학교 박물관
3	지표조사	2011	40여기 고분 확인(정밀지표조사)	군산대학교 박물관
4	발굴조사	2013	32호분 : 수혈식석곽묘 2기, 청동거울, 금동신발편, 유개장경호 등	전북대학교 박물관
5	발굴조사	2017	파괴분 수습조사 : 기대편, 금동이식 등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6	시굴조사	2019	29·30·31호분 : 매장시설 확인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7	발굴조사	2021	30호분 : 수혈식석곽묘 2기, 사행상철기, 초미금구, 기대 등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8	시굴조사	2021	38호분 : 도굴 구덩이 확인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9	시굴조사	2022	고분군 주변 시굴조사 : 원삼국시대 주거지 확인	(재)조선문화유산연구원

○ 정비이력

- 사업명 :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주변정비
- 사업기간 : 2020.12. ~ 2021.12.
- 주요사업 : 시·발굴조사지역 정비, 수목정비, 경관정비, 토지매입 등
- 시굴지 정비 : 시굴조사 완료지역 정비 / 205,351천원 / 72,000m²
- 발굴지 정비 : 발굴조사 완료 고분 정비(15~19·36호분) / 257,032천원 / 27,800m²
- 경관정비 : 민묘·도굴갱 정비, 고분군 주변 석축설치 / 251,422천원 / 4,328m²
- 수목정비 : 외래수종, 고사목, 경합목 등 수목 제거(30%) / 201,419천원 / 50,000m²
- 토지매입 100% 완료(98,225m²)
- 시설물철거 : 고분군 내 지장주(전신주), 축사, 농경시설물 등 철거 완료

라. 관계전문가 의견

< 2022. 3. 11. 000(문화재수리기술위원) >

- 고분 발굴조사 결과 30호분은 주체부인 수혈식 석곽묘, 주석곽 길이 6.42m, 폭 0.75m, 높이 1.76m이며 부장석곽은 길이 3.1m, 폭 0.4m, 높이 0.8m이며, 묘광(고려석곽묘)은 길이 2.1m., 폭 0.96m, 높이 0.7m로 조사되었음.

- 봉분은 조사결과 봉분 축조는 1, 2차로 나누어 축조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금회 정비할 30호분은 기정비한 32호분과 동일한 양상이므로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고분 평면 및 주구를 기준으로 금회 정비하도록 하고 고분 및 주변에 잔디를 식재하도록 함.
- 정비하는 고분의 봉분 높이는 기정비한 32호분을 기준으로 하여 봉분 판축다짐 시 안정각 40도를 고려하여 정비하도록 함.
- 2021년 10월 발굴조사 후 복토된 현재의 지반은 연약하므로 터파기 후 점토다짐으로 성토다짐 하도록 함.
- 봉분의 정비는 발굴조사 결과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정비하도록 함.

< 2022. 3. 11. 000(군산대학교 교수)>

- 경남과 전북의 도계를 이룬 鷲飛山에서 아영분지 한복판까지 뻗어 내린 산줄기와 다시 북쪽으로 갈라진 산자락에 봉토의 직경이 20m 내외 되는 40여 개의 가야 고총이 자리하고 있으며, 연비산에서 서쪽으로 아영분지 중앙까지 뻗은 산줄기가 남원시 아영면 두락리와 인월면 유곡리의 행정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가야 고총이 산줄기 양쪽에 반절씩 분포되어,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라고 유적의 이름을 붙였으며, 2018년 호남지방에서 처음으로 가야 관련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음.
- 모두 세 차례의 학술발굴로 봉토의 중앙부에 하나의 매장시설만 배치된 단곽식이고, 봉토의 가장자리에 주구를 둘렀고, 매장시설이 지상식 혹은 반지하식이며, 개석 혹은 벽석 사이에 점토 바름, 벽석의 축조방법, 바닥시설, 장축방향 등 유구의 속성이 운봉고원 내 남원 월산리·청계리·유곡리·두락리 고분군이 서로 상통하는 것으로 밝혀졌음.
-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32호분 주석곽 서쪽 피장자의 발 부근에서 금동신발편·영락·영락고리·금동못 등이 수습됐으며, 금동신발은 몸통부에 타출기법으로 능형문과 영락이 장식되어, 공주 무령왕릉과 나주 신촌리 9호분, 익산 입점리 1호분에서 출토품과 유물의 속성이 흡사하였음.
- 32호분 주석곽 동쪽에 부장된 獸帶鏡은 피장자의 머리 부분에서 배면이 위로 향하도록 부장되어 있었는데, 전면에서는 주칠흔이, 경면에서는 주칠흔·포흔·수피흔·목질흔 등이 확인됐으며, 전면에 새겨 놓은 ‘宜子孫’과 같은 유물의 속성이 공주 무령왕릉에서 나온 수대경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30호분은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주관 학술발굴로 그 성격이 밝혀진 가야 고총으로 봉토의 가장자리에서 확인된 주구는 조사성과를 근거로 주구의 복원을 실시하고, 본래 봉토를 평탄하게 다듬어 밭으로 경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봉토의 평면형태, 높이 등은 이미 복원된 32호분을 참고로 고총의 보수 정비 공사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마. 검토의견(수리기술과)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고 기 정비된 32호분을 참고하여 계획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위원회에서 제시한 다음의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함.>

- 금회 정비하는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30호)」의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전문가 자문을 통해 상세 도면 보완이 필요함.
- 주석곽 중심 축 방향과 고분 정비 축 방향이 차이가 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판축을 다지며 고분을 축소 시 다른 토질을 교대로(점토판축, 사질토판축 등) 역경사지게 계획하고 이를 설계도서에 표기하도록 함.
- 1970년대 항공사진 및 지형도 등을 참고하고 30호분 주변의 지형 및 주변 고분의 높이 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태와 높이를 설정하도록 함.
- 석실 정비에 대한 세부계획을 보완하도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6명 / 조건부가결 6명

2. 강진 전라병영성 복원정비공사

가. 제안사항

-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사적 「강진 전라병영성」 복원정비공사에 대한 설계(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고증조사, 발굴조사 및 사례조사와 사적분과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병영성 서북쪽권역(객사권역)의 기반시설(배수체계) 정비와 더불어 연희당권역 건물 복원, 담장복원, 연지정비 등에 대하여 수리기술위원회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 복원정비분과 제2차 회의('22.3.22) 결과 : 보류
 - 전라병영성의 배수체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연지의 자연순환을 검토하도록 함. (해자 정비 등이 완료될때까지 임시적으로 강제순환 조치 가능)
 - 유구 분석을 통한 용적 적용을 명확화하여 평면 계획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이와 연계한 건물 가구법도 재검토하도록 함.
 - 연희당과 담장의 유구가 일부 중첩되고 건립시기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므로 담장 복원여부 및 규모 등에 대해 재검토하도록 함.
 - 잘 남아 있는 유구 중 건물기초로 사용가능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연지 담수량, 구들구조, 낙양각 등에 대한 상세도면을 보완토록 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강진군수
- (2) 대상문화재명 : 강진 전라병영성 / 사적
 - 소 재 지 : 전라남도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 319-1 외
 - 지 정 일 : 1997. 04. 21.
-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강진 전라병영성 복원정비공사
 - 공사예정금액 : 2,212백만원
 - 사업지침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복원정비를 위한 설계를 시행한다.

○ 사업내용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건물복원	-연희당 부속채(3칸*1칸) -연희당+ 익채, 연지회랑 (5칸*2칸-연희당, 4칸*1칸-익채, 3칸*1칸-회랑) -부속채: 줄고래 -익채: 4면 개방형	-연희당 부속채(3칸*1칸) -연희당+ 익채, 연지회랑 (5.5칸*2칸-연희당, 4칸*1칸-익채, 3칸*1칸-회랑) -부속채: 허튼고래 -익채: 마루 설치 및 4면 창호 설치(통로제외)	
토목공사	-연희당 권역 지형복원	좌동	
연지 정비공사	-연희당 연지 : 13.6*9.1*1.55m -객사 연지 : 19.4*30*1.75m	-연희당 연지 : 13.6*9.1*1.55m -객사 연지 : 19.4*30*1.75m -동헌 연지1 : 5.9*5.2*1.5m -동헌 연지2 : 13.5*4.6*2.2m	
담장공사	-연희당 권역 담장 : A형 88.88m, B형 6.55m	-연희당 권역 담장 : A형 77.12m, B형 6.55m -연희당연지~객사연지 사이 담장(13.26m) 제외 -담장 조명제외	
배수체계정비공사	-연희당 서측 배수로 및 후면석축 -북서쪽 내탁배수로(석재 배수로) *배수로 폭 0.5, 높이 0.5, 길이 75.26m *배수로 폭 0.75, 높이 0.5, 길이 134.45m	-연희당 서측 배수로 및 후면석축 -북서쪽 내탁배수로(토사측구) -입수구와 연지 배수체계 연계	
기타공사	-철거공사 : 성내 지장물 및 성외 민가 철거 -포장공사 : 연희당 권역 마사토포장	좌동	

○ 보수이력

2008년도	• 복원공사 :	동문옹성 37.5m 북문지 서측성곽 12.0m 북문지 동측성곽 18.0m 동문지 북측성곽 47.5m 동문지 남측성곽 5.5m 남문지 동측성곽 22.5m • 정비공사 : 동문지 남측성곽 40.0m 북문지 서측성곽 9.0m 북문지 동측성곽 9.6m 동문지 북측성곽 14.0m
2009년도	• 복원공사 :	남문루 129.02㎡ (하층 76.95㎡, 상층 52.07㎡) 남문육축 29.8m
2010년도	• 복원공사 :	동문육축 19.4m 남문육축 1.3m 남문지 서측성곽(A구간) 40.0m 서문지 북측성곽(B구간) 46.0m 동문지 북측성곽(E구간) 55.5m 동문지 남측성곽(G구간) 84.5m 동벽치(E구간, 제6치) 8.2m
2011년도	• 복원공사 :	동문루 54.44㎡ 동문지 남측성곽(G구간) 51.4m 동벽치(제7치) 7.2m 서문루 57.98㎡ (공사 진행 중)
2012년도	• 복원공사 :	서문루 72.59㎡
2016년도	• 복원공사 :	북문루 49.28㎡
2016년도	• 정비공사 :	건물지 36개소(5,979M2) 및 유구보호공사
2020년도	• 정비공사 :	북동측 성곽 긴급보수공사

1999년도	• 복원공사 :	남문옹성 20.0m
2000년도	• 복원공사 :	남문옹성 20.6m
	• 정비공사 :	남문지 서측성곽 110.5m 서문지 남측성곽 67.1m
2001년도	• 복원공사 :	서문지 남측성곽 119.3m
	• 정비공사 :	서문옹성 42.2m 서문지 북측성곽 64.8m
2002년도	• 복원공사 :	서문옹성 42.2m 서문지 북측성곽 101.3m 북서치(제4치) 8.0m
	• 정비공사 :	북문옹성 40.1m 북문지 서측, 동측 성곽 64.9m
2003년도	• 복원공사 :	북문옹성 40.1m 북문지 동측, 동문지 북측 성곽 133.0m 남문지 동측성곽 50.5m 북동치(제5치) 8.2m, 남동치(제8치) 8.2m
2006년도	• 복원공사 :	서문육축 20.0m, 북문육축 20.0m 남문지 동측성곽 50.5m 북문지 서측성곽 16.0m 남동치(제8치) 8.2m
	• 정비공사 :	남문육축 28.6m, 동문육축 20.0m 동문옹성 40.0m 서문지 북측성곽 43.0m 동문지 북측성곽 108.0m 북문지 서측성곽 20.5m 북문지 동측성곽 27.6m 동벽치(제6치) 8.2m

○ 발굴조사

• 1999. 03. 05 ~ 1999. 04. 20	: 1차 발굴조사(남문지 및 웅성, 남측성곽)
• 2000. 03. 15 ~ 2000. 04. 10	: 2차 발굴조사(서문지 남측성곽)
• 2001. 01. 15 ~ 2001. 03. 18	: 3차 발굴조사(서문지 및 웅성, 서문지 북측성곽)
• 2002. 01. 21 ~ 2002. 02. 08	: 4차 발굴조사(북문지 및 웅성, 북측성곽)
• 2003. 06. 09 ~ 2003. 06. 19 2003. 11. 12 ~ 2003. 12. 31	: 5차 발굴조사(동문지 및 웅성, 동문지 북측성곽, 남문지 동측성곽)
• 2004. 07. 19 ~ 2004. 12. 15	: 전라병영성 및 주변 종합정비기본계획 학술연구용역
• 2008. 12. 10 ~ 2009. 07. 10	: 강진 전라병영성지 원형복원을 위한 문화유적 발굴조사 (동문지, 동문지 남측성곽)
• 2011.	: 성 내부 시굴조사
• 2012.	: 성 내부 발굴조사(1차)
• 2013.	: 성 내부 발굴조사(2차)
• 2014. ~ 2015.	: 성 내부 발굴조사(3차)
• 2015. ~ 2016.	: 성 내부 발굴조사(4차)
• 2016.	: 성 내부 발굴조사(5차)
• 2016. ~ 2017.	: 성 내부 발굴조사(6차)
• 2017.	: 해자 발굴조사

라. 협의회 회의 결과(복원정비분과 및 사적분과위원회)

○ 협의회 회의(2021.12.15. / 000, 000, 000, 000, 000, 000 위원)

- 사적 강진 전라병영성 단기 복원 계획(안)의 전반적인 추진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임.
- 다만, 건물 복원, 유구 정비 등의 시행에 따른 향후 유지관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성 내부 배수체계 개선, 지형 정비 및 전기.통신 등의 설비시설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음.

- 복원 예정인 건축물 중 객사, 환선정 등은 추가적인 발굴조사 등이 필요함에 따라 설계 승인은 추후 검토 필요.(‘22년도에 시행 예정인 사업의 범위에 한정하여 설계승인 시행 필요)
- 이에 따라 2022년도에는 성 내부의 배수체계 개선, 지형 정비 등 기반 조성 사업과 연희당 권역의 건물 복원 및 연희당·객사 연지의 복원정비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복원 예정 건축물의 규모, 양식 등 기술적인 사항은 향후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에서 검토 필요.

마. 현지조사 의견

- 현지조사(2022.2.16. 000, 000, 000 위원, 000 전문위원)
 - 병영성 내부의 기반시설은 내·외부의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정비공사시 훼손의 우려가 있는 남쪽과 동쪽은 향후 연차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건물복원과 정비가 이루어지는 객사권역을 우선 시행함이 좋겠음.

마. 검토의견(수리기술과)

- 본 사업은 고증조사, 발굴조사, 사례조사 및 사적분과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추진되었으며,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와 문화재위원회 협의회 의견 및 현지조사 의견 그리고 복원정비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 계획을 수정보완함.
- 기반시설 계획 관련
 - 지형복원 : 전체유구의 원형레벨을 검토하여 성내부의 원지형레벨을 계획하는 등 전체지형계획을 수립하였음.
 - 배수체계 : 장기적으로 해자 정비 후 입수구 1,2와 물길을 연결하고 성내부와 출수구 3,4,5와도 해자 정비 후 물길을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성내부는 지형복원을 통한 자연배수를 계획함.
 - 전기, 통신, 소방 : 통제실(남행각) 및 발전실을 계획하여 전체적인 전기, 통신, CCTV 및 조명계획 수립
- 금회 설계 관련
 - <배수계획>
 - 성 내부와 외부의 연결은 현재로서는 무리가 있고, 성내부는 지형복원을 통한 자연배수를 유도하였으며, 입수구와 연지 4개소의 배수체계를 연결하였음.
 - 객사의 서북측 연희당 권역에 대한 배수계획을 반영하고 서북쪽 내탁배수로로 계획함.
 - 내탁배수로는 인위적인 석재배수로가 아닌 토사배수로로 변경하였으며 적정

하다고 판단됨.

<연희당권역 건물복원관련>

- 강진 전라병영성의 복원기준은 병영성의 위용이 가장 잘 드러나는 18세기 중·후반으로 삼았음.
- 용척은 기 복원한 문루의 용척(312mm)을 적용하였고, 발굴 결과 추가분석 등을 통해 일부 평면을 조정하였으며, 공사 시 임시보호된 상부를 걷어내고 발굴결과를 확인하여 최종 검토할 계획임.
- 연희당의 지붕가구는 3분변작으로 계획하여 처마내밀기를 조정함으로써 추녀의 구조적 안정을 꾀함.
- 연희당과 익랑이 만나는 부분은 연희당 기둥에 익랑의 상부가구가 붙는 형태이며, 지붕형태는 연희당 지붕 아래쪽으로 익랑 지붕이 끼어들어 익랑의 용마루는 연희당 지붕의 수키와골과 연결되도록 하여 회첨골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음.
- 연지의 석축 위에 연희당 초석이 올라서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연희당의 낙양각은 사례조사 등을 통해 계획에서 제외함.
- 부속채의 온돌은 아궁이, 고래둑(줄고래에서 허튼고래로 변경)을 설치하고 연도는 배면 고막이벽에 가랫굴로 계획함.

<연희당 담장 관련>

- 연희당~동헌의 중첩된 담장유구는 조성시기는 다르지만 설계단계에서 연희당의 성격상 차폐기능의 담장이 필요하다는 자문의견에 따라 계획한 것임.
-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연희당 연지 및 객사 연지 사이의 담장은 계획에서 제외함.
- 현 계획상 우수처리문제는 무리가 없어 보임.

<연지 정비 관련>

- 동헌권역 연지 2개소를 추가로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함.
- 연지 석축 내부구조는 공사 시 발굴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함.
- 연지의 담수량은 우수 시 표면수와 토층에서 유입된 물로 유지되고 있으며 정화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기타사항>

- 발굴유구 중 기단, 적심 및 초석은 공사시 하부 지정에 대한 지내력 테스트 등을 통해 재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함.
- 본 사업은 기술지도사업으로 사업전반에 대해 기술지도자문을 받아 추진토록 할 계획임.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익량의 간 사이는 발굴조사보고서를 따르도록 함.
- 다음의 사항은 기술지도단을 구성한 후 정밀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함.
 - 발굴 유구 확인 후 평면계획을 정밀하게 재검토하도록 함.
 - 조정된 평면계획에 따라 입면계획의 조정이 필요함.
 - 배수체계는 현황을 고려하여 재검토하되,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복원정비에 따른 유구보존 조치계획을 구체화하도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6명 / 조건부가결 6명

【보고사항】

안건번호 (복원 2022-3차-003)

3. 문화재 수리 표준품셈 개정

가. 제안사항

- 2022년 개정 고시된 「문화재 수리 표준품셈」의 추가 개정(안)을 보고합니다.

나. 제안사유

-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신설·개정 조사한 품셈항목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품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수리기술평가장)
- (2) 신청내용
 - 항목 신설 : 4공종 19항목(목공사 2, 미장공사 3, 단청공사 12, 기타공사 2)
 - 항목 조정 : 5공종 14항목(목공사 1, 지붕공사 5, 미장공사 1, 온돌공사 1, 석공사 6)
 - 오류 수정 : 1공종 (석공사 1)
- (3) 신청인 의견
 - 문화재 수리 시 필요한 공종임에도 기존 품셈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던 전통소재 단청과 목공사, 미장공사, 기타공사 등 일부 공종에서의 품셈항목을 신설하여, 해당 공종에서의 합리적 예정가격 산출의 근거 마련
 - 당초 운영 중인 품셈 항목의 중복 또는 오류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의 개정과 '18년부터 추진되어온 품셈의 정비·모니터링 결과의 반영 등

라. 참고사항

- 문화재 수리 표준품셈 개정(안)

마.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6명 / 접수 6명

2022년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추가 개정(안)

I 개 요

- 항목 신설 : 4공종 19항목(목공사 2, 미장공사 3, 단청공사 12, 기타공사 2)
- 항목 조정 : 5공종 14항목(목공사 1, 지붕공사 5, 미장공사 1, 온돌공사 1, 석공사 6)
- 오류 수정 : 1공종(석공사 1)

공종	구분	항목명	변동사항	개정사유
목공사	조정	4-28 기둥동바리이음 4-28-1 주먹장이음(원기둥) 4-28-2 주먹장이음(각기둥)	항목 세분화, 품 조정	- 기존 기둥동바리이음 항목을 원기둥, 각기둥으로 구분 * 원기둥과 각기둥의 품 차이 발생, 주먹장이음 명시
	신설	4-28-3 엇걸이산지이음(원기둥)	신설	- 기존 동바리이음 품셈은 주먹장이음을 기준으로 산출되어 엇걸이산지이음 시공 시 품 차이 발생
		4-28-4 엇걸이산지이음(각기둥)		
지붕공사	조정	5-3 산자엮기	산자쪼개 기 품 추가	- 기존 산자엮기 시 장작산자의 경우 제재소에서 생산 * 인력으로 원목을 쪼개어 산자를 생산함으로써 산자의 섬유질을 살려 진새 부착력 증대 및 원형 기법 전승
		5-8 마루기와이기(3겹)	유사항목 통합, 재료량 조정(정미 량)	- 마루기와이기 항목 통합으로 가독성 확보 - 3겹이기의 암키와 수량 오류 조정(정미량) - 기와 재료할증 포함 문구 삭제(별도 할증 적용 중)
		5-9 마루기와이기(5겹)		
		5-10 마루기와이기(7겹)		
		5-11 마루기와이기(9겹)		
		5-9 ~ 5-31 항목번호	항목번호 수정	- 마루기와이기 항목 통합으로 항목번호 재정렬
미장공사	조정	7-11 양성바르기	재료량 및 기준 수정(재벌)	- 양성바르기 시 재벌 바름 기준 및 재료량 누락 * 초벌, 재벌, 정벌로 양성 바름 기준 명시
	신설	7-18 포벽해체	신설	- 포벽 해체 및 바르기 품 누락 * 일반 벽체와 포벽의 시공 품 차이 발생
		7-19 포벽바르기 7-19-1 포회벽바르기	신설	
		7-19-2 포재사벽바르기	신설	
온돌공사	조정	9-0 적용기준	소규모공사 산정 기준	- 온돌공사의 항목별 수량산출 기준이 달라 소규모 적용기준을 온돌해체 또는 설치 수량을 기준으로 명시 * 항목별 수량산출 기준이 달라 소규모공사 산출 기준 모호

공종	구분	항목명	변동사항	개정사유
석공사	조정	4 산출기준	붙임 참고	수식 오류에 따른 정정
		11-14 거친돌쌓기	면가공품 별도계상 명시	- 거친돌쌓기 시 석재간 맞댄면을 다량 가공해야될 경우 별도 품으로 계상할 수 있음을 명시
		11-14-1 0.035㎥ 이하		
		11-14-2 0.035㎥ 초과~0.3㎥ 미만		
		11-14-3 0.3㎥ 이상		
		11-23 거친돌쌓기(기계장비)		
		11-23-1 0.035㎥ 이하		
단청공사	신설	11-23-2 0.035㎥ 초과~0.3㎥ 미만	전통소재 단청 신설	- 천연안료를 사용하여 단청공사를 수행할 시 현대화학안료와 품의 차이가 큼 * 천연안료를 사용한 전통소재단청을 활성화 하여 전통재료의 진흥·보급 도모 - 또한, 단청공사 시 소모되는 재료량에 대한 기준 제시 ※ 벽화(전통소재단청, 단순·복잡)의 경 우 조사현장 수가 부족하여 추가조사 후 신설 예정
		11-23-3 0.3㎥ 이상		
		13-21 석간주가칠(전통소재단청)		
		13-22 너록가칠(전통소재단청)		
		13-23 너록가칠-창호(전통소재단청)		
		13-24 먹긋기(전통소재단청)		
		13-24-1 먹긋기(먹/분)		
		13-24-2 먹긋기(먹/분+변)		
		13-25 색긋기(전통소재단청)		
		13-25-1 색긋기(2빛)		
		13-25-2 색긋기(3빛)		
		13-26 모로단청(전통소재단청)		
		13-27 금모로단청(전통소재단청)		
기타공사	신설	13-28 금단청(전통소재단청)	신설	- 담장공사 시 속채움의 해체·설치에 대한 품 누락
		13-29 벽화(전통소재단청)		
		13-29-1 단순		
	신설	13-29-2 복잡	신설	
		15-15 담장속채움해체		
		15-16 담장속채움		

II 개정(안)

구분	당 초	개 정	비 고																														
제4장 목공사																																	
조정	4-28 기둥동바리이음 (개소당)		*기존 동바리이음항목(주먹장) 원기둥, 각기둥 구분 *기존품에 원기둥(동바리)치목품 추가																														
	<table><tr><th>구분</th><th>규격</th><th>단위</th><th>수량</th><th>비고</th></tr><tr><td>한식목공조공</td><td></td><td>인</td><td>0.4</td><td></td></tr><tr><td>한식목공조공</td><td></td><td>인</td><td>0.12</td><td></td></tr><tr><td>드잡이공</td><td></td><td>인</td><td>0.32</td><td></td></tr><tr><td>보통인부</td><td></td><td>인</td><td>0.38</td><td></td></tr><tr><td>공구손료</td><td>인력품의 5%</td><td>식</td><td>1</td><td></td></tr></table> [주] ① 본 품은 기둥이 부식되거나 파손된 부분을 잘라내고 새로 제작한 기둥(동바리)을 이음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기둥(동바리)이음은 주먹장이음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본 품에는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④ 기둥(동바리) 재료와 치목품은 별도 계상한다. ⑤ 잡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한식목공조공		인	0.4		한식목공조공		인	0.12		드잡이공		인	0.32		보통인부		인	0.38		공구손료	인력품의 5%	식	1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한식목공조공		인	0.4																														
한식목공조공		인	0.12																														
드잡이공		인	0.32																														
보통인부		인	0.38																														
공구손료	인력품의 5%	식	1																														
4-28 기둥동바리이음 4-28-1 주먹장이음(원기둥) (개소당)																																	
	<table><tr><th>구분</th><th>규격</th><th>단위</th><th>수량</th><th>비고</th></tr><tr><td>한식목공조공</td><td></td><td>인</td><td>0.82</td><td></td></tr><tr><td>한식목공조공</td><td></td><td>인</td><td>0.37</td><td></td></tr><tr><td>드잡이공</td><td></td><td>인</td><td>0.32</td><td></td></tr><tr><td>보통인부</td><td></td><td>인</td><td>0.59</td><td></td></tr><tr><td>공구손료</td><td>인력품의 5%</td><td>식</td><td>1</td><td></td></tr></table> [주] ① 본 품은 기둥을 드잡이하면서 부식되거나 파손된 부분을 잘라내고, 신재로 치목한 기둥(동바리)을 이음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에는 치목품이 포함되어 있다. ③ 본 품은 원형제재목을 사용하여 이음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원목(原木)을 사용할 경우 치목품은 '4-5 4각치목', '4-6 8각치목', '4-7 16각치목'에 따른다. ④ 본 품에는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⑤ 기둥(동바리) 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⑥ 장부 통과기는 1개소당 한식목공 0.18인을 가산한다. ⑦ 잡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한식목공조공		인	0.82		한식목공조공		인	0.37		드잡이공		인	0.32		보통인부		인	0.59		공구손료	인력품의 5%	식	1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한식목공조공		인	0.82																														
한식목공조공		인	0.37																														
드잡이공		인	0.32																														
보통인부		인	0.59																														
공구손료	인력품의 5%	식	1																														
	4-28-2 주먹장이음(각기둥) (개소당)																																
	<table><tr><th>구분</th><th>규격</th><th>단위</th><th>수량</th><th>비고</th></tr><tr><td>한식목공조공</td><td></td><td>인</td><td>0.73</td><td></td></tr><tr><td>한식목공조공</td><td></td><td>인</td><td>0.32</td><td></td></tr><tr><td>드잡이공</td><td></td><td>인</td><td>0.32</td><td></td></tr><tr><td>보통인부</td><td></td><td>인</td><td>0.55</td><td></td></tr><tr><td>공구손료</td><td>인력품의 5%</td><td>식</td><td>1</td><td></td></tr></table> [주] ① 본 품은 기둥을 드잡이하면서 부식되거나 파손된 부분을 잘라내고, 신재로 치목한 기둥(동바리)을 이음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에는 치목품이 포함되어 있다. ③ 본 품은 4각제재목을 사용하여 이음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원목(原木)을 사용할 경우 치목품은 '4-5 4각치목'에 따른다. ④ 본 품에는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⑤ 기둥(동바리) 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⑥ 장부 통과기는 1개소당 한식목공 0.18인을 가산한다. ⑦ 잡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한식목공조공		인	0.73		한식목공조공		인	0.32		드잡이공		인	0.32		보통인부		인	0.55		공구손료	인력품의 5%	식	1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한식목공조공		인	0.73																														
한식목공조공		인	0.32																														
드잡이공		인	0.32																														
보통인부		인	0.55																														
공구손료	인력품의 5%	식	1																														

구분	당 초	개 정	비 고																									
신설	- 신 설 -	4-28-3 엇걸이산지이음(원기둥) (개소당) <table> <tr> <th>구분</th> <th>규격</th> <th>단위</th> <th>수량</th> <th>비고</th> </tr> <tr> <td>한 식 목 공</td> <td></td> <td>인</td> <td>1.01</td> <td></td> </tr> <tr> <td>한 식 목 공 조 공</td> <td></td> <td>인</td> <td>0.61</td> <td></td> </tr> <tr> <td>보 통 인 부</td> <td></td> <td>인</td> <td>0.51</td> <td></td> </tr> <tr> <td>공 구 손 료</td> <td>인력품의 5%</td> <td>식</td> <td>1</td> <td></td> </tr> </table> [주] ① 본 품은 원기둥이 해체된 상태에서 부식되거나 파손된 부분을 잘라내고, 신재로 치목한 기둥(동바리)을 이음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에는 치목품이 포함되어 있다. ③ 본 품은 원형제재목을 사용하여 이음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원목(原木)을 사용할 경우 치목품은 ‘4-5 4각치목’, ‘4-6 8각치목’, ‘4-7 16각치목’ 에 따른다. ④ 본 품에는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⑤ 기둥(동바리) 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⑥ 장부 흠파기는 1개소당 한식목공 0.18인을 가산한다. ⑦ 드잡이는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⑧ 잡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한 식 목 공		인	1.01		한 식 목 공 조 공		인	0.61		보 통 인 부		인	0.51		공 구 손 료	인력품의 5%	식	1		*동바리이음(엇걸이산지이음) 항목신설 -원기둥, 각기둥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한 식 목 공		인	1.01																									
한 식 목 공 조 공		인	0.61																									
보 통 인 부		인	0.51																									
공 구 손 료	인력품의 5%	식	1																									
신설	- 신 설 -	4-28-4 엇걸이산지이음(각기둥) (개소당) <table> <tr> <th>구분</th> <th>규격</th> <th>단위</th> <th>수량</th> <th>비고</th> </tr> <tr> <td>한 식 목 공</td> <td></td> <td>인</td> <td>0.83</td> <td></td> </tr> <tr> <td>한 식 목 공 조 공</td> <td></td> <td>인</td> <td>0.50</td> <td></td> </tr> <tr> <td>보 통 인 부</td> <td></td> <td>인</td> <td>0.42</td> <td></td> </tr> <tr> <td>공 구 손 료</td> <td>인력품의 5%</td> <td>식</td> <td>1</td> <td></td> </tr> </table> [주] ① 본 품은 각기둥이 해체된 상태에서 부식되거나 파손된 부분을 잘라내고, 신재로 치목한 기둥(동바리)을 이음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에는 치목품이 포함되어 있다. ③ 본 품은 4각제재목을 사용하여 이음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원목(原木)을 사용할 경우 치목품은 ‘4-5 4각치목’에 따른다. ④ 본 품에는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⑤ 기둥(동바리) 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⑥ 장부 흠파기는 1개소당 한식목공 0.18인을 가산한다. ⑦ 드잡이는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⑧ 잡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한 식 목 공		인	0.83		한 식 목 공 조 공		인	0.50		보 통 인 부		인	0.42		공 구 손 료	인력품의 5%	식	1		*동바리이음(엇걸이산지이음) 항목신설 -원기둥, 각기둥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한 식 목 공		인	0.83																									
한 식 목 공 조 공		인	0.50																									
보 통 인 부		인	0.42																									
공 구 손 료	인력품의 5%	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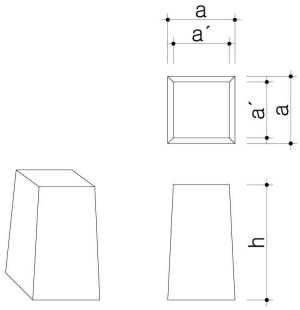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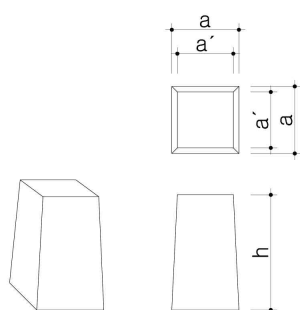
구분	당 초					개 정					비 고	
제5장 지붕공사												
조정	5-3 산자엮기					5-3 산자엮기					*산자쪼개기 신설 - 인력으로 원목을 쪼개어 산자를 생산함으로써 산자의 섬유질을 살려 진 새 부착력 증대 및 원형 기법 전승	
	(㎡당)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산 새 한 한 보 공	자 끼 공 조 공 인 부 료	두께 30mm Ø7.5mm, 1타 65m	㎡ m 인 인 인	0.03 4.55 0.02 0.02 0.07		산 새 한 한 보 공	자 끼 공 조 공 인 부 료	두께 30mm Ø7.5mm, 1타 65m	㎡ m 인 인 인	0.03 4.55 0.02 0.02 0.07		
		인력품의 3%	인	1				인력품의 3%	인	1		
[주] 본 품에는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주] ① 본 품에는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② 인력으로 원목을 쪼개어 산자로 사용할 경우 아래 품을 가산한다.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원 보 공	목 인 부 료	일반재	㎡ 인 식	0.04 0.23 1		원 보 공	목 인 부 료	일반재	㎡ 인 식	0.04 0.23 1		
		인력품의 3%	인					인력품의 3%	인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 산자쪼개기 품 및 재료 가산 시 산자엮기의 산자 재료량은 계상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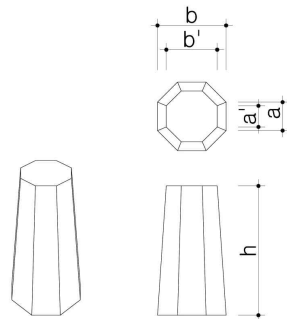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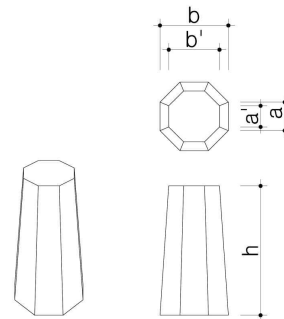
구분	당	초	개	정	비	고
조정	5-8 마루기와의기(3겹)		5-8 마루기와의기		*유사항목 통합 (3겹,5겹,7겹,9겹)	
	(m당)		(m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암 키 와	중와	매	9.92		
	수 키 와	대와	매	9.16		
	착 고 기 와	중와	매	3.33		
	진생마 석사	대와	매	3.03		
	한 식 와	중와	매	6.66		
	한 식 와	대와	매	6.06		
	보 통 인 부	중와	매	0.054		
	공 구 손 료	대와	매	4.68		
		인력품의 5%	인	0.018		
			인	0.04		
			인	0.12		
			인	0.2		
			인	1		
	[주] ① 본 품에는 착고이기, 적새이기, 숫마루장이기, 품잠바르기 품이 포함되어 있다.		[주] ① 본 품에는 착고이기, 적새이기, 숫마루장이기, 품잠바르기 품이 포함되어 있다.			
	② 본 품에는 재료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② 본 품에는 비빔 및 소운반 품이 포함되어 있다.			
	③ 본 품에는 비빔 및 소운반 품이 포함되어 있다.		③ 부고이기를 하는 경우 아래 품 및 재료량을 가산한다.			
	④ 부고이기를 하는 경우에는 1m당 진흙 0.043m ³ , 생석회 3.74kg, 마사토 0.014m ³ , 수키와 중와 6.59매, 대와 6매, 한식와공 0.02인을 별도 가산한다.		(m당)		*기와 재료할증 포함 삭제	
	⑤ 품잠바르기 재료량은 1m ² 당 생석회 550kg, 백시멘트 110kg, 모래 0.59m ³ 을 별도 가산한다.		구분		단위	
	⑥ 생석회피우기(소화)는 100kg당 보통인부 0.13인을 가산한다.		한 식 와 공		수량	
			인		0.02	
			④ 품잠바르기 재료량은 1m ² 당 생석회 550kg, 백시멘트 110kg, 모래 0.59m ³ 을 별도 가산한다.			
			⑤ 생석회피우기(소화)는 100kg당 보통인부 0.13인을 가산한다.			
			⑥ 9겹 초과일 때에는 2겹당 한식와공, 한식와공조공, 보통인부 품을 각각 25%씩 별도 가산한다.			
			⑦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m당)		*재료량 별도 제공 (정미량)	
			구분		단위	
			수량		부고이기	
			3겹		5겹	
			7겹		9겹	
			8.34		13.89	
			7.70		12.82	
			19.44		17.95	
			25.00		23.07	
			-		-	
			3.33		6.59	
			3.03		6	
			6.66		-	
			6.06		-	
			0.054		0.059	
			4.68		5.07	
			0.018		0.02	
			0.043		0.043	
			3.74		3.74	
			0.014		0.014	
			0.018		0.02	
			0.054		0.059	
			4.68		5.07	
			0.018		0.02	
			0.054		0.059	
			4.68		5.07	
			0.018		0.02	
			0.054		0.059	
			4.68		5.07	
			0.018		0.02	
			0.054		0.059	
			4.68		5.07	
			0.018		0.02	
			0.054		0.059	
			4.68		5.07	
			0.018		0.02	
			0.054		0.059	
			4.68		5.07	
			0.018		0.02	
			0.054		0.059	
			4.68		5.07	
			0.018		0.02	
			0.054		0.059	
			4.68		5.07	
			0.018		0.02	
			0.054		0.059	
			4.68		5.07	
			0.018		0.02	
			0.054		0.059	
			4.68		5.07	
			0.018		0.02	
			0.054		0.059	
			4.68		5.07	
			0.018		0.02	
			0.054		0.059	
			4.68		5.07	
			0.018		0.02	
			0.054		0.059	
			4.68		5.07	
			0.018		0.02	
			0.054		0.059	
			4.68		5.07	
			0.018		0.02	
			0.054		0.059	
			4.68		5.07	
			0.018		0.02	
			0.054		0.059	
			4.68		5.07	
			0.018		0.02	
			0.054		0.059	
			4.68		5.07	
			0.018		0.02	
			0.054		0.059	
			4.68		5.07	
			0.018		0.02	
			0.054		0.059	
			4.68		5.07	
			0.018		0.02	
			0.054		0.059	
			4.68		5.07	
			0.018		0.02	
			0.054		0.059	
			4.68		5.07	
			0.018		0.02	
			0.054		0.059	
			4.68		5.07	
			0.018		0.02	
			0.054		0.059	
			4.68		5.07	
			0.018		0.02	
			0.054		0.059	
			4.68		5.07	
			0.018		0.02	
			0.054		0.059	
			4.68		5.07	
			0.018		0.02	
			0.054		0.059	
			4.68		5.07	
			0.018		0.02	
			0.054		0.059	
			4.68		5.07	
			0.018		0.02	
			0.054		0.059	
			4.68		5.07	
			0.018		0.02	
			0.054		0.059	
			4.68		5.07	
			0.018		0.02	
			0.054		0.059	
			4.68		5.07	
			0.018		0.02	
			0.054		0.059	
			4.68		5.07	
			0.018		0.02	
			0.054		0.059	
			4.68		5.07	
			0.018		0.02	

구분	당 초	개 정	비 고																																																				
제7장 미장공사																																																							
신설	- 신 설 -	7-18 포벽해체 (㎡당) <table><tr><th>구분</th><th>규격</th><th>단위</th><th>수량</th><th>비고</th></tr><tr><td rowspan="5">한 식 미 장 공 한 식 미 장 공 조 보 통 인 부 공 구 손 료</td><td rowspan="5">인력품의 3%</td><td>인</td><td>0.23</td><td rowspan="5"></td></tr><tr><td>인</td><td>0.12</td></tr><tr><td>인</td><td>0.12</td></tr><tr><td>인</td><td>1</td></tr><tr><td>식</td><td></td></tr></table> [주] ① 본 품은 정벌바름해체, 재벌바름해체, 초벌바름해체, 외위기해체 후 해체한 재료 운반 및 정리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에는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③ 비계매기는 필요 시 “2-5 강관비계매기(미장·단청공사용)”에 따른다. ④ 보양에 소요되는 재료 및 품은 “2-7 보양”에 따른다. ⑤ 잡재료는 별도로 계상한다.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한 식 미 장 공 한 식 미 장 공 조 보 통 인 부 공 구 손 료	인력품의 3%	인	0.23		인	0.12	인	0.12	인	1	식		*포벽해체 항목신설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한 식 미 장 공 한 식 미 장 공 조 보 통 인 부 공 구 손 료	인력품의 3%	인	0.23																																																				
		인	0.12																																																				
		인	0.12																																																				
		인	1																																																				
		식																																																					
신설	- 신 설 -	7-19 포벽바르기 7-19-1 포회벽바르기 (㎡당) <table><tr><th>구분</th><th>규격</th><th>단위</th><th>수량</th><th>비고</th></tr><tr><td rowspan="6">중 가 힘 눌 설 새</td><td rowspan="6">시 깃새 살 외 외 끼 Ø6~9mm</td><td>m</td><td>1.42</td><td rowspan="6">외위기</td></tr><tr><td>m</td><td>1.35</td></tr><tr><td>m</td><td>1.16</td></tr><tr><td>m</td><td>10.33</td></tr><tr><td>m</td><td>3.08</td></tr><tr><td>m</td><td>14.81</td></tr><tr><td>진 여</td><td>흙 물</td><td>㎡ kg</td><td>0.032 0.384</td><td>초벌</td></tr><tr><td>진 모 여</td><td>흙 래 물</td><td>㎡ ㎡ kg</td><td>0.015 0.004 0.041</td><td>재벌</td></tr><tr><td rowspan="3">생 여</td><td rowspan="3">석 회 물 풀</td><td>kg</td><td>2.7</td><td rowspan="3">정벌</td></tr><tr><td>kg</td><td>0.09</td></tr><tr><td>kg</td><td>0.126</td></tr><tr><td rowspan="5">한 식 미 장 공 한 식 미 장 공 조 보 통 인 부 공 구 손 료</td><td rowspan="5">인력품의 3%</td><td>인</td><td>1.13</td><td rowspan="5"></td></tr><tr><td>인</td><td>0.86</td></tr><tr><td>인</td><td>0.31</td></tr><tr><td>인</td><td>1</td></tr><tr><td>식</td><td></td></tr></table> [주] ① 본 품은 포벽의 외위기, 초벌바르기, 재벌바르기, 회벽정벌바르기 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바름두께는 초벌 90mm 내외, 재벌 8mm 내외, 정벌 3mm 내외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본 품에는 재료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④ 본 품에는 비빔 및 소운반 품이 포함되어 있다. ⑤ 생석회 피우기(소화)를 할 경우 생석회 100kg당 보통인부 0.13인을 가산한다. ⑥ 비계매기는 필요 시 “2-5 강관비계매기(미장·단청공사용)”에 따른다. ⑦ 보양에 소요되는 재료 및 품은 “2-7 보양”에 따른다.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중 가 힘 눌 설 새	시 깃새 살 외 외 끼 Ø6~9mm	m	1.42	외위기	m	1.35	m	1.16	m	10.33	m	3.08	m	14.81	진 여	흙 물	㎡ kg	0.032 0.384	초벌	진 모 여	흙 래 물	㎡ ㎡ kg	0.015 0.004 0.041	재벌	생 여	석 회 물 풀	kg	2.7	정벌	kg	0.09	kg	0.126	한 식 미 장 공 한 식 미 장 공 조 보 통 인 부 공 구 손 료	인력품의 3%	인	1.13		인	0.86	인	0.31	인	1	식		*포벽바르기(회벽, 재사벽) 항목신설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중 가 힘 눌 설 새	시 깃새 살 외 외 끼 Ø6~9mm	m	1.42	외위기																																																			
		m	1.35																																																				
		m	1.16																																																				
		m	10.33																																																				
		m	3.08																																																				
		m	14.81																																																				
진 여	흙 물	㎡ kg	0.032 0.384	초벌																																																			
진 모 여	흙 래 물	㎡ ㎡ kg	0.015 0.004 0.041	재벌																																																			
생 여	석 회 물 풀	kg	2.7	정벌																																																			
		kg	0.09																																																				
		kg	0.126																																																				
한 식 미 장 공 한 식 미 장 공 조 보 통 인 부 공 구 손 료	인력품의 3%	인	1.13																																																				
		인	0.86																																																				
		인	0.31																																																				
		인	1																																																				
		식																																																					

구분	당 초	개 정	비 고																														
신설	- 신 설 -	7-19-2 포재사벽바르기 (㎡당) <table><tr><th>구분</th><th>구 격</th><th>단 위</th><th>수 량</th><th>비 고</th></tr><tr><td>증가 힘 늘 설 새</td><td>깃새 살 외 외 끼</td><td>m m m m m m</td><td>1.42 1.35 1.16 10.33 3.08 14.81</td><td>외위기</td></tr><tr><td>진 여</td><td>흙 물</td><td>m³ kg</td><td>0.032 0.384</td><td>초벌</td></tr><tr><td>진 모 여</td><td>흙 래 물</td><td>m³ m³ kg</td><td>0.015 0.004 0.041</td><td>재벌</td></tr><tr><td>진 생 모</td><td>흙 회 래</td><td>kg kg kg kg</td><td>0.006 4.05 0.003 0.126</td><td>정벌</td></tr><tr><td>한 한 보 공</td><td>식 식 통 구</td><td>미 장 공 인 손</td><td>장 조 인 부 료</td><td>인력품의 3%</td></tr></table> [주] ① 본 품은 포벽의 외위기, 초벌바르기, 재벌바르기, 재사벽정벌바르기 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바름두께는 초벌 90mm 내외, 재벌 8mm 내외, 정벌 3mm 내외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본 품에는 재료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④ 본 품에는 비빔 및 소운반 품이 포함되어 있다. ⑤ 생석회 피우기(소화)를 할 경우 생석회 100kg당 보통인부 0.13인을 가산한다. ⑥ 비계매기는 필요 시 “2-5 강관비계매기(미장·단청공사용)”에 따른다. ⑦ 보양에 소요되는 재료 및 품은 “2-7 보양”에 따른다.	구분	구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증가 힘 늘 설 새	깃새 살 외 외 끼	m m m m m m	1.42 1.35 1.16 10.33 3.08 14.81	외위기	진 여	흙 물	m³ kg	0.032 0.384	초벌	진 모 여	흙 래 물	m³ m³ kg	0.015 0.004 0.041	재벌	진 생 모	흙 회 래	kg kg kg kg	0.006 4.05 0.003 0.126	정벌	한 한 보 공	식 식 통 구	미 장 공 인 손	장 조 인 부 료	인력품의 3%	
구분	구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증가 힘 늘 설 새	깃새 살 외 외 끼	m m m m m m	1.42 1.35 1.16 10.33 3.08 14.81	외위기																													
진 여	흙 물	m³ kg	0.032 0.384	초벌																													
진 모 여	흙 래 물	m³ m³ kg	0.015 0.004 0.041	재벌																													
진 생 모	흙 회 래	kg kg kg kg	0.006 4.05 0.003 0.126	정벌																													
한 한 보 공	식 식 통 구	미 장 공 인 손	장 조 인 부 료	인력품의 3%																													

구분	당 초					개 정					비 고
	7-11 양성바르기 (㎡당)					7-11 양성바르기 (㎡당)					*재벌바르기 재료량 추가(재벌바르기 기준)

구분	당 초	개 정	비 고
제9장 온돌공사			
조정	9-0 적용기준 3. 소규모 공사 온돌공사 수량이 20㎡ 이하일 경우에는 인력품을 50% 가산한다. 단, 제1장 적용기준의 소단위공사와 둘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9-0 적용기준 3. 소규모 공사 온돌공사 해체 또는 설치 수량이 20㎡ 이하일 경우에는 인력품을 50% 가산한다. 단, 제1장 적용기준의 소단위공사와 둘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온돌공사의 경우 항목별 단위기준이 모두 다름. 따라서 온돌해체·설치 기준으로 소규모 공사 명시
제11장 석공사			
	4. 산출기준 [주] ② 수량산출기준 도식 ㉞ 장초석(사각) : 각뿔대 구적공식 상하면을 제한 표면적 $S=2 \times S' \times (a+a')$, $S'=\sqrt{(a-a')^2/4+h^2}$ (a:밑변의 길이, a':윗변의 길이, h:높이)  장초석(4각) ㉟ 장초석(팔각) : 각뿔대 구적공식 상하면을 제한 표면적 $S=4 \times S' \times (a+a')$, $S'=\sqrt{(a-a')^2/4+h^2}$ (a:밑변의 길이, a':윗변의 길이, h:높이)	4. 산출기준 [주] ② 수량산출기준 도식 ㉞ 장초석(사각) : 각뿔대 구적공식 상하면을 제외한 표면적 $S = 2 \times h' \times (a+a')$ $(* h' = \sqrt{\frac{(a-a')^2}{4} + h^2})$  장초석(4각) ㉟ 장초석(팔각) : 각뿔대 구적공식 상하면을 제외한 표면적 $S = 4 \times h' \times (a+a')$ $(* h' = \sqrt{\frac{(b-b')^2}{4} + h^2})$	

구분	당 초	개 정	비 고																					
	 장초석(팔각)	 장초석(팔각)																						
11-14 거친돌쌓기 11-14-1 0.035m' 이하	<table><tr><th>구분</th><th>규격</th><th>단위</th><th>수량</th><th>비고</th></tr><tr><td colspan="5">- 내 용 생 략 -</td></tr></table> [주] ① 본 품은 0.035m' 이하 거친돌을 인력으로 쌓기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에는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 내 용 생 략 -					11-14 거친돌쌓기 11-14-1 0.035m' 이하	<table><tr><th>구분</th><th>규격</th><th>단위</th><th>수량</th><th>비고</th></tr><tr><td colspan="5">- 현 행 동 일 -</td></tr></table> [주] ① 본 품은 0.035m' 이하 거친돌을 인력으로 쌓기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에는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③ 면가공품은 필요 시 별도 계상한다.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 현 행 동 일 -					*면가공품 별도 계 상 추가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 내 용 생 략 -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 현 행 동 일 -																								
11-14-2 0.035m' 초과~0.3m' 미만	<table><tr><th>구분</th><th>규격</th><th>단위</th><th>수량</th><th>비고</th></tr><tr><td colspan="5">- 내 용 생 략 -</td></tr></table> [주] ① 본 품은 0.035m' 초과~0.3m' 미만 거친돌을 인력으로 쌓기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에는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 내 용 생 략 -					11-14-2 0.035m' 초과~0.3m' 미만	<table><tr><th>구분</th><th>규격</th><th>단위</th><th>수량</th><th>비고</th></tr><tr><td colspan="5">- 현 행 동 일 -</td></tr></table> [주] ① 본 품은 0.035m' 초과~0.3m' 미만 거친돌을 인력으로 쌓기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에는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③ 면가공품은 필요 시 별도 계상한다.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 현 행 동 일 -					*면가공품 별도 계 상 추가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 내 용 생 략 -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 현 행 동 일 -																								
11-14-3 0.3m' 이상	<table><tr><th>구분</th><th>규격</th><th>단위</th><th>수량</th><th>비고</th></tr><tr><td colspan="5">- 내 용 생 략 -</td></tr></table> [주] ① 본 품은 0.3m' 이상 거친돌을 인력으로 쌓기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에는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 내 용 생 략 -					11-14-3 0.3m' 이상	<table><tr><th>구분</th><th>규격</th><th>단위</th><th>수량</th><th>비고</th></tr><tr><td colspan="5">- 현 행 동 일 -</td></tr></table> [주] ① 본 품은 0.3m' 이상 거친돌을 인력으로 쌓기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에는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③ 면가공품은 필요 시 별도 계상한다.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 현 행 동 일 -					*면가공품 별도 계 상 추가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 내 용 생 략 -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 현 행 동 일 -																								

구분		당 초					개 정					비 고											
		11-23 거친돌쌓기(기계장비) 11-23-1 0.035㎡ 이하					11-23 거친돌쌓기(기계장비) 11-23-1 0.035㎡ 이하					*면가공품 별도 계 상 추가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 내 용 생 략 -					- 현 행 동 일 -																
		[주] ① 본 품은 0.035㎡ 이하 거친돌을 묶고 기계장비로 들어올려 쌓기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에는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주] ① 본 품은 0.035㎡ 이하 거친돌을 묶고 기계장비로 들어올려 쌓기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에는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③ 면가공품은 필요 시 별도 계상한다.																
		11-23-2 0.035㎡ 초과~0.3㎡ 미만					11-23-2 0.035㎡ 초과~0.3㎡ 미만					*면가공품 별도 계 상 추가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 내 용 생 략 -					- 현 행 동 일 -																
		[주] ① 본 품은 0.035㎡ 초과~0.3㎡ 미만 거친돌을 묶고 기계장비로 들어올려 쌓기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에는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주] ① 본 품은 0.035㎡ 초과~0.3㎡ 미만 거친돌을 묶고 기계장비로 들어올려 쌓기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에는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③ 면가공품은 필요 시 별도 계상한다.																
		11-23-3 0.3㎡ 이상					11-23-3 0.3㎡ 이상					*면가공품 별도 계 상 추가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 내 용 생 략 -					- 현 행 동 일 -																
		[주] ① 본 품은 0.3㎡ 이상 거친돌을 묶고 기계장비로 들어올려 쌓기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에는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주] ① 본 품은 0.3㎡ 이상 거친돌을 묶고 기계장비로 들어올려 쌓기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에는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③ 면가공품은 필요 시 별도 계상한다.																
제13장 단청공사																							
신설		- 신설 -					13-21 석간주가칠(전통소재단청) (㎡당)																
							<table><tr><td>구분</td><td>규격</td><td>단위</td><td>수량</td><td>비고</td></tr><tr><td>특수화공</td><td>구손료</td><td>인력품의 3%</td><td>인식</td><td>0.03 0.10 1</td><td></td></tr></table>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특수화공	구손료	인력품의 3%	인식	0.03 0.10 1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특수화공	구손료	인력품의 3%	인식	0.03 0.10 1																			
		[주] ① 본 품은 2회 가칠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비계매기는 필요시 “2-5 강관비계매기(미장·단청공사용)”에 따른다.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당)																
							<table><tr><td>구분</td><td>단위</td><td>수량</td></tr><tr><td>석 간 주</td><td>g</td><td>53.47</td></tr><tr><td>아 교</td><td>g</td><td>7.45</td></tr></table>					구분	단위	수량	석 간 주	g	53.47	아 교	g	7.45			
구분	단위	수량																					
석 간 주	g	53.47																					
아 교	g	7.45																					

구분	당 초	개 정	비 고																																
신설	- 신설 -	13-22 너록가칠(전통소재단청) (㎡당) <table><tr><th>구분</th><th>규격</th><th>단위</th><th>수량</th><th>비고</th></tr><tr><td>특수화공</td><td>인</td><td>인</td><td>0.02</td><td></td></tr><tr><td>화구손료</td><td>인력품의 3%</td><td>식</td><td>0.09</td><td></td></tr><tr><td></td><td></td><td></td><td>1</td><td></td></tr></table> [주] ① 본 품은 2회 가칠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비계매기는 필요시 “2-5 강관비계매기(미장·단청공사용)”에 따른다.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당) <table><tr><th>구분</th><th>단위</th><th>수량</th></tr><tr><td>너록</td><td>g</td><td>36.31</td></tr><tr><td>아교</td><td>g</td><td>6.71</td></tr></table>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특수화공	인	인	0.02		화구손료	인력품의 3%	식	0.09					1		구분	단위	수량	너록	g	36.31	아교	g	6.71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특수화공	인	인	0.02																																
화구손료	인력품의 3%	식	0.09																																
			1																																
구분	단위	수량																																	
너록	g	36.31																																	
아교	g	6.71																																	
신설	- 신설 -	13-23 너록가칠-창호(전통소재단청) (㎡당) <table><tr><th>구분</th><th>규격</th><th>단위</th><th>수량</th><th>비고</th></tr><tr><td>특수화공</td><td>인</td><td>인</td><td>0.04</td><td></td></tr><tr><td>화구손료</td><td>인력품의 3%</td><td>식</td><td>0.90</td><td></td></tr><tr><td></td><td></td><td></td><td>1</td><td></td></tr></table> [주] ① 본 품은 아교 혹은 찰쌀풀을 사용하여 창호를 2회 가칠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창호설치 및 해체품은 별도 계상한다. ③ 꽃살, 궁판에 채색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④ 비계매기는 필요시 “2-5 강관비계매기(미장·단청공사용)”에 따른다. ⑤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당) <table><tr><th>구분</th><th>단위</th><th>수량</th></tr><tr><td>너록</td><td>g</td><td>109.15</td></tr><tr><td>호분 / 백토</td><td>g</td><td>53.27</td></tr><tr><td>아교 / 찰쌀</td><td>g</td><td>12.62</td></tr></table>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특수화공	인	인	0.04		화구손료	인력품의 3%	식	0.90					1		구분	단위	수량	너록	g	109.15	호분 / 백토	g	53.27	아교 / 찰쌀	g	12.62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특수화공	인	인	0.04																																
화구손료	인력품의 3%	식	0.90																																
			1																																
구분	단위	수량																																	
너록	g	109.15																																	
호분 / 백토	g	53.27																																	
아교 / 찰쌀	g	12.62																																	

구분	당 초	개 정	비 고																									
신설	- 신설 -	13-24 먹긋기(전통소재단청) 13-24-1 먹긋기(먹/분) (㎡당) <table><tr><th>구분</th><th>규격</th><th>단위</th><th>수량</th><th>비고</th></tr><tr><td>특수화공</td><td>인력품의 3%</td><td>인인식</td><td>0.06 0.19 1</td><td></td></tr></table> [주] ① 본 품은 바탕가칠 위에 먹, 호분/연백을 사용하여 먹긋기 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은 2회 긋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가칠은 별도 계상한다. ④ 비계매기는 필요시 “2-5 강관비계매기(미장·단청공사용)”에 따른다. ⑤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당) <table><tr><th>구분</th><th>단위</th><th>수량</th></tr><tr><td>먹</td><td>g</td><td>0.70</td></tr><tr><td>호 분 / 연 백</td><td>g</td><td>6.77</td></tr><tr><td>아 교</td><td>g</td><td>0.81</td></tr></table>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특수화공	인력품의 3%	인인식	0.06 0.19 1		구분	단위	수량	먹	g	0.70	호 분 / 연 백	g	6.77	아 교	g	0.81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특수화공	인력품의 3%	인인식	0.06 0.19 1																									
구분	단위	수량																										
먹	g	0.70																										
호 분 / 연 백	g	6.77																										
아 교	g	0.81																										
신설	- 신설 -	13-24-2 먹긋기(먹/분+변) (㎡당) <table><tr><th>구분</th><th>규격</th><th>단위</th><th>수량</th><th>비고</th></tr><tr><td>특수화공</td><td>인력품의 3%</td><td>인인식</td><td>0.08 0.30 1</td><td></td></tr></table> [주] ① 본 품은 바탕가칠 위에 먹, 호분/연백을 사용하여 먹긋기하고, 추가로 삼록 혹은 황단을 사용하여 변긋기 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은 2회 긋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가칠은 별도 계상한다. ④ 비계매기는 필요시 “2-5 강관비계매기(미장·단청공사용)”에 따른다. ⑤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당) <table><tr><th>구분</th><th>단위</th><th>수량</th></tr><tr><td>먹</td><td>g</td><td>0.70</td></tr><tr><td>호 분 / 연 백</td><td>g</td><td>6.77</td></tr><tr><td>삼 록 / 황 단</td><td>g</td><td>25.77</td></tr><tr><td>아 교</td><td>g</td><td>1.03</td></tr></table>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특수화공	인력품의 3%	인인식	0.08 0.30 1		구분	단위	수량	먹	g	0.70	호 분 / 연 백	g	6.77	삼 록 / 황 단	g	25.77	아 교	g	1.03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특수화공	인력품의 3%	인인식	0.08 0.30 1																									
구분	단위	수량																										
먹	g	0.70																										
호 분 / 연 백	g	6.77																										
삼 록 / 황 단	g	25.77																										
아 교	g	1.03																										

구분	당 초	개 정	비 고																															
신설	- 신설 -	13-25 색긋기(전통소재단청) 13-25-1 색긋기(2빛) (㎡당) <table> <tr> <th>구분</th> <th>규격</th> <th>단위</th> <th>수량</th> <th>비고</th> </tr> <tr> <td>특수화공</td> <td rowspan="3">인력품의 3%</td> <td>인</td> <td>0.09</td> <td rowspan="3"></td> </tr> <tr> <td>화공</td> <td>인</td> <td>0.43</td> </tr> <tr> <td>공손료</td> <td>식</td> <td>1</td> </tr> </table> [주] ① 본 품은 바탕가칠 위에 주홍/황단, 육색, 호분/연백을 사용하여 2빛 색긋기 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은 2회 긋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가칠은 별도 계상한다. ④ 비계매기는 필요시 “2-5 강관비계매기(미장·단청공사용)”에 따른다. ⑤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당) <table> <tr> <th>구분</th> <th>단위</th> <th>수량</th> </tr> <tr> <td>주 홍 / 황 단</td> <td>g</td> <td>26.21</td> </tr> <tr> <td>호 분 / 연 백</td> <td>g</td> <td>27.07</td> </tr> <tr> <td>아 교</td> <td>g</td> <td>1.67</td> </tr> </table>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특수화공	인력품의 3%	인	0.09		화공	인	0.43	공손료	식	1	구분	단위	수량	주 홍 / 황 단	g	26.21	호 분 / 연 백	g	27.07	아 교	g	1.67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특수화공	인력품의 3%	인	0.09																															
화공		인	0.43																															
공손료		식	1																															
구분	단위	수량																																
주 홍 / 황 단	g	26.21																																
호 분 / 연 백	g	27.07																																
아 교	g	1.67																																
신설	- 신설 -	13-25-2 색긋기(3빛) (㎡당) <table> <tr> <th>구분</th> <th>규격</th> <th>단위</th> <th>수량</th> <th>비고</th> </tr> <tr> <td>특수화공</td> <td rowspan="3">인력품의 3%</td> <td>인</td> <td>0.09</td> <td rowspan="3"></td> </tr> <tr> <td>화공</td> <td>인</td> <td>0.64</td> </tr> <tr> <td>공손료</td> <td>식</td> <td>1</td> </tr> </table> [주] ① 본 품은 바탕가칠 위에 석간주, 주홍/황단, 육색, 호분/연백을 사용하여 3빛 색긋기 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은 2회 긋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가칠은 별도 계상한다. ④ 비계매기는 필요시 “2-5 강관비계매기(미장·단청공사용)”에 따른다. ⑤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당) <table> <tr> <th>구분</th> <th>단위</th> <th>수량</th> </tr> <tr> <td>석 간 주</td> <td>g</td> <td>11.82</td> </tr> <tr> <td>주 홍 / 황 단</td> <td>g</td> <td>28.16</td> </tr> <tr> <td>호 분 / 연 백</td> <td>g</td> <td>10.03</td> </tr> <tr> <td>아 교</td> <td>g</td> <td>2.72</td> </tr> </table>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특수화공	인력품의 3%	인	0.09		화공	인	0.64	공손료	식	1	구분	단위	수량	석 간 주	g	11.82	주 홍 / 황 단	g	28.16	호 분 / 연 백	g	10.03	아 교	g	2.72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특수화공	인력품의 3%	인	0.09																															
화공		인	0.64																															
공손료		식	1																															
구분	단위	수량																																
석 간 주	g	11.82																																
주 홍 / 황 단	g	28.16																																
호 분 / 연 백	g	10.03																																
아 교	g	2.72																																

구분	당 초	개 정	비 고																																																								
신설	- 신설 -	13-26 모로단청(전통소재단청) (㎡당) <table><tr><th>구분</th><th>규격</th><th>단위</th><th>수량</th><th>비고</th></tr><tr><td>특수화공</td><td>공공</td><td>인인식</td><td>0.06</td><td></td></tr><tr><td>화공</td><td>손료</td><td>인인식</td><td>1.69</td><td></td></tr><tr><td>공</td><td>인력품의 3%</td><td>식</td><td>1</td><td></td></tr></table> [주] ① 본 품은 바탕가칠 위에 모로단청 문양을 2회 채색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가칠은 별도 계상한다. ③ 비계매기는 필요시 “2-5 강관비계매기(미장·단청공사용)”에 따른다. ④ 타초본만들기품은 “13-4 타초본만들기”에 따른다. ⑤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당) <table><tr><th>구분</th><th>단위</th><th>수량</th></tr><tr><td>삼 록</td><td>g</td><td>39.55</td></tr><tr><td>하 엽</td><td>g</td><td>14.63</td></tr><tr><td>황 단</td><td>g</td><td>9.19</td></tr><tr><td>주 홍</td><td>g</td><td>6.34</td></tr><tr><td>석 간 주</td><td>g</td><td>2.79</td></tr><tr><td>삼 칭</td><td>g</td><td>3.43</td></tr><tr><td>대 칭</td><td>g</td><td>2.91</td></tr><tr><td>석 황 / 토 황 / 등 황</td><td>g</td><td>2.46</td></tr><tr><td>먹</td><td>g</td><td>1.27</td></tr><tr><td>호 분 / 연 백 / 백 토</td><td>g</td><td>9.61</td></tr><tr><td>아 교</td><td>g</td><td>4.26</td></tr></table> <td></td>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특수화공	공공	인인식	0.06		화공	손료	인인식	1.69		공	인력품의 3%	식	1		구분	단위	수량	삼 록	g	39.55	하 엽	g	14.63	황 단	g	9.19	주 홍	g	6.34	석 간 주	g	2.79	삼 칭	g	3.43	대 칭	g	2.91	석 황 / 토 황 / 등 황	g	2.46	먹	g	1.27	호 분 / 연 백 / 백 토	g	9.61	아 교	g	4.26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특수화공	공공	인인식	0.06																																																								
화공	손료	인인식	1.69																																																								
공	인력품의 3%	식	1																																																								
구분	단위	수량																																																									
삼 록	g	39.55																																																									
하 엽	g	14.63																																																									
황 단	g	9.19																																																									
주 홍	g	6.34																																																									
석 간 주	g	2.79																																																									
삼 칭	g	3.43																																																									
대 칭	g	2.91																																																									
석 황 / 토 황 / 등 황	g	2.46																																																									
먹	g	1.27																																																									
호 분 / 연 백 / 백 토	g	9.61																																																									
아 교	g	4.26																																																									

구분	당 초	개 정	비 고																																																	
신설	- 신설 -	13-27 금모로단청(전통소재단청) (㎡당) <table><tr><th>구분</th><th>규격</th><th>단위</th><th>수량</th><th>비고</th></tr><tr><td>특수화공</td><td>화공손료</td><td>인인식</td><td>0.08 2.85 1</td><td></td></tr></table> [주] ① 본 품은 바탕가칠 위에 금모로단청 문양을 2회 채색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가칠은 별도 계상한다. ③ 비계매기는 필요시 “2-5 강관비계매기(미장·단청공사용)”에 따른다. ④ 타초본만들기품은 “13-4 타초본만들기”에 따른다. ⑤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당) <table><tr><th>구분</th><th>단위</th><th>수량</th></tr><tr><td>삼</td><td>록</td><td>g</td></tr><tr><td>하</td><td>엽</td><td>g</td></tr><tr><td>너</td><td>록</td><td>g</td></tr><tr><td>황</td><td>단</td><td>g</td></tr><tr><td>주</td><td>홍</td><td>g</td></tr><tr><td>석</td><td>간 주</td><td>g</td></tr><tr><td>삼</td><td>칭</td><td>g</td></tr><tr><td>대</td><td>칭</td><td>g</td></tr><tr><td>석 황 / 토 황 / 등 황</td><td>g</td><td>4.43</td></tr><tr><td>먹</td><td>g</td><td>0.82</td></tr><tr><td>호 분 / 연 백 / 백 토</td><td>g</td><td>34.05</td></tr><tr><td>아</td><td>교</td><td>g</td></tr></table>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특수화공	화공손료	인인식	0.08 2.85 1		구분	단위	수량	삼	록	g	하	엽	g	너	록	g	황	단	g	주	홍	g	석	간 주	g	삼	칭	g	대	칭	g	석 황 / 토 황 / 등 황	g	4.43	먹	g	0.82	호 분 / 연 백 / 백 토	g	34.05	아	교	g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특수화공	화공손료	인인식	0.08 2.85 1																																																	
구분	단위	수량																																																		
삼	록	g																																																		
하	엽	g																																																		
너	록	g																																																		
황	단	g																																																		
주	홍	g																																																		
석	간 주	g																																																		
삼	칭	g																																																		
대	칭	g																																																		
석 황 / 토 황 / 등 황	g	4.43																																																		
먹	g	0.82																																																		
호 분 / 연 백 / 백 토	g	34.05																																																		
아	교	g																																																		

구분	당 초	개 정	비 고																																																	
신설	- 신설 -	13-28 금단청(전통소재단청) (㎡당) <table><tr><th>구분</th><th>규격</th><th>단위</th><th>수량</th><th>비고</th></tr><tr><td>특수화공</td><td>인력품의 3%</td><td>인인식</td><td>0.17 3.29 1</td><td></td></tr></table> [주] ① 본 품은 바탕가칠 위에 금단청 문양을 2회 채색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가칠은 별도 계상한다. ③ 비계매기는 필요시 “2-5 강관비계매기(미장·단청공사용)”에 따른다. ④ 타초본만들기품은 “13-4 타초본만들기”에 따른다. ⑤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당) <table><tr><th>구분</th><th>단위</th><th>수량</th></tr><tr><td>삼 록</td><td>g</td><td>32.50</td></tr><tr><td>하 엽</td><td>g</td><td>31.27</td></tr><tr><td>너 록</td><td>g</td><td>1.91</td></tr><tr><td>황 단</td><td>g</td><td>33.32</td></tr><tr><td>주 홍</td><td>g</td><td>10.90</td></tr><tr><td>석 간 주</td><td>g</td><td>6.64</td></tr><tr><td>삼 칭</td><td>g</td><td>3.39</td></tr><tr><td>대 칭</td><td>g</td><td>2.91</td></tr><tr><td>석 황 / 토 황 / 등 황</td><td>g</td><td>1.54</td></tr><tr><td>먹</td><td>g</td><td>1.48</td></tr><tr><td>호 분 / 연 백 / 백 토</td><td>g</td><td>21.63</td></tr><tr><td>아 교</td><td>g</td><td>5.02</td></tr></table>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특수화공	인력품의 3%	인인식	0.17 3.29 1		구분	단위	수량	삼 록	g	32.50	하 엽	g	31.27	너 록	g	1.91	황 단	g	33.32	주 홍	g	10.90	석 간 주	g	6.64	삼 칭	g	3.39	대 칭	g	2.91	석 황 / 토 황 / 등 황	g	1.54	먹	g	1.48	호 분 / 연 백 / 백 토	g	21.63	아 교	g	5.02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특수화공	인력품의 3%	인인식	0.17 3.29 1																																																	
구분	단위	수량																																																		
삼 록	g	32.50																																																		
하 엽	g	31.27																																																		
너 록	g	1.91																																																		
황 단	g	33.32																																																		
주 홍	g	10.90																																																		
석 간 주	g	6.64																																																		
삼 칭	g	3.39																																																		
대 칭	g	2.91																																																		
석 황 / 토 황 / 등 황	g	1.54																																																		
먹	g	1.48																																																		
호 분 / 연 백 / 백 토	g	21.63																																																		
아 교	g	5.02																																																		
신설	- 신설 -	13-29 별화(전통소재단청) 13-29-1 단순 (㎡당) <table><tr><th>구분</th><th>규격</th><th>단위</th><th>수량</th><th>비고</th></tr><tr><td>특수화공</td><td>인력품의 3%</td><td>인인식</td><td>1.95 1</td><td></td></tr></table> [주] ① 본 품은 바탕가칠 위에 부채의 전체 부분이나 계풍 등에 등·식물 등의 그림을 그리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은 조채, 밑그림, 채색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재료량은 문양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가칠은 별도 계상한다. ⑤ 비계매기는 필요시 “2-5 강관비계매기(미장·단청공사용)”에 따른다.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특수화공	인력품의 3%	인인식	1.95 1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특수화공	인력품의 3%	인인식	1.95 1																																																	

구분		단		초		개		정		비		고			
신설	- 신 설 -											13-29-2 복잡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특 수 화 공	인	인	3.40											
	공 구 손 료	인력품의 3%		식	1										
	[주] ① 본 품은 바탕가칠 위에 부재의 전체 부분이나 계풍 등에 인물·용 등의 그림을 그리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은 조채, 밑그림, 채색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재료량은 문양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가칠은 별도 계상한다.														
	⑤ 비계매기는 필요시 “2-5 강관비계매기(미장·단청공사용)”에 따른다.														
제15장 기타공사															
신설	- 신 설 -											15-15 담장속채움해체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한 식 미 장 공	인	인	0.66											
	한 식 미 장 공 조 공	인	인	0.27											
	보 통 인 부	인	인	0.40											
	공 구 손 료	인력품의 5%		식	1										
	[주] ① 본 품은 담장해체 시 속채움해체와 해체한 부재의 운반 및 정리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에는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③ 잡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신설	- 신 설 -											15-16 담장속채움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생 석 회		kg	40											
	진 흙		㎡	0.2											
	채 움 자 갈	Ø40mm 내외	㎡	0.25											
	잡 석	Ø100mm 내외	㎡	1											
	한 식 미 장 공	인	인	0.22											
	한 식 미 장 공 조 공	인	인	0.4											
	보 통 인 부	인	인	0.38											
공 구 손 료	인력품의 5%		식	1											
[주] ① 본 품은 담장쌓기 시 내부를 잡석, 채움자갈, 진흙 등으로 다지면서 속채움 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에는 재료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③ 본 품에는 비빔 및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④ 생석회 피우기(소화)를 할 경우 100kg당 보통인부 0.13인을 가산한다.															